

창원지방법원 2024. 10. 21 선고 2024가단10152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8. 26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1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4. 13.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8,995,5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8,995,576원 및 그 중 6,739,379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황정언

별지